

수돗물은 과학적인 물입니다.

###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

우120-030 서울시 서대문구 합동 27-1 / 전화 (02)390-7324 / 전송 363-5258  
처리부서 : 과정과 (서대문별관 3층) 담당 김정옥

문서번호 과정 11250- 1157  
시행일자 1998. 6. 10 ( 년 )  
(경유) (제 1 안)  
수신 내부결재  
참조



취급		시 장	
보존	년	600	
본부장	전결		
차 장	34	법무담당관 설사필	
부 장	기안		
과장	김석영	기안 김정옥	협조

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코자 합니다.

첨부 : 공고문안 1부. 끝.

(제 2 안)

수신 서울특별시장

참조 공보담당관

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개정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시보게제 의뢰

1.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코자 하오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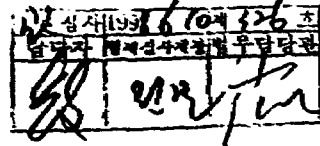
첨부 : 공고문안 1부. 끝.



###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

# 공 고 (안)

서울특별시공고 제 1118- 호



## 서울특별시수도조례개정안 입법예고

서울특별시수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1998. 6.

서울특별시장

### 1. 개정취지

여러세대가 1개의 수도계량기로 함께 수도물을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 등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제거주하고 있는 호수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적용기준을 조정하고, 아울러 월평균 사용량 1㎡미만의 단수 발생에 대한 그 처리방법을 조정하여 서민의 요금부담 경감 및 불만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도물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동주택(다가구, 원룸주택 등)에 대하여 건축허가 당시의 호수보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가 많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

수도조례

- 나.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수도물 사용량을 산정한 결과 평균사용량 또는 평균공동사용량의 단수가 1㎡ 미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에는 이를 절상하던 것을 개선하여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하도록 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8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(참조 :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(연락전화 : 3907-324)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주소·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
- 다. 기타 참고사항(연락전화번호 등) 등

